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99 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이양수・서천호・이인선

최형두 • 박덕흠 • 이종배

조경태 · 김소희 · 정희용

배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불편 초래,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그러나 식품위생법, 축산물 위생관리법,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,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,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,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

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및 제47조 등).

법률 제 호

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변경하려면"을 "변경하거나 영업을 폐업하려면"으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"을 "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폐업신고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제3항 중 "변경사항을 신고하지"를 "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6조(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) 제16조(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-----변경하거나 영업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 을 폐업하려면-----여야 한다.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(3) -----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 -----제1항에 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변경 및 폐업신고를-----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-----.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④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영업 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 부렁으로 정한다. 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제21조 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 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 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

<신 설>

- 제47조(과태료) ① ② (생 략)
 -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 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.
 - ④ (생 략)

-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 에 따른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 다.
- 제47조(과태료) ① ② (현행과 같음)
- 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-
 - ④ (현행과 같음)